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 | |
|----------------|-----|
| 선 람 | 기관장 |
| | |

제 77호 2015. 8. 7(금)

조 례

- 남원시 조례 제1177 호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1
- 남원시 조례 제 1178 호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 5
- 남원시 조례 제1180 호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9
- 남원시 조례 제1179 호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3
- 남원시 조례 제1181 호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6
- 남원시 조례 제 1182 호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36
- 남원시 조례 제 1183 호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52
- 남원시 조례 제 1184 호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규 칙

- 남원시 규칙 제 553 호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67

훈 령

- 남원시 훈령 제 345 호 남원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71

|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8월 7일

남원시 조례 제1177 호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남원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5.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회유치 등) ①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체육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육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향골체육공원 등 각종 체육시설에 국내·외 우수경기과 전지훈련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유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육단체나 경기단체에게 유치에 필요한 사항과 진행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회유치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대회 참가
3.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를 통한 스포츠산업 육성
5.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체육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행사의 개최와 대회 참가
3.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포상) ① 시장은 남원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 정책 결정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8월 7일

남원시 조례 제 1178 호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8월 7일

남원시 조례 제1179 호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양”을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사슴”을 “사슴·메추리”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 관련)

| 구분 | 절대금지 지역 | 상대제한 지역 |
|------|---------------------------------------------------------------------------------------------------------------------------------------------------------------------------------------------------------------------------------------------------------------------------------------------------------------------------------------------------------------------------------------------|------------------------------------------------------------------------------------------------------------------------------------------------------------------------------------------------------------------------------------------------------------------------------------------------------------------------------------------------------------------------------------------------------------------------------------------------------------------------------------------|
| 제한지역 | <p>○ 다음 각 동지역은 전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충동 - 죽향동 - 하정동 - 쌍교동 - 노암동 - 신촌동 - 어현동 - 금동 - 천거동 - 조산동 - 왕정동 - 향교동 - 산곡동 - 도통동 - 월락동 - 고죽동 <p>○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취입보)에서 상류하천(요천·백암천)5km까지 지적·임야도상 하천의 지적선에서 양쪽 300m이내의 대지</p> | <p>○ 절대금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지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고속국도휴게소, 병·의원, 입소정원 30명 이상의 사회복지시설로서 대지 경계선에서 축사대지 경계선까지 지적·임야도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p> <p>○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육우의 경우: 300m 이내 지역 - 젓소의 경우: 500m 이내 지역 - 말의 경우: 100m 이내 지역 - 양·사슴의 경우: 700m 이내 지역 - 닭·오리·메추리개의 경우: 1,000m 이내 지역 (다만, 무창계사·무창오리사에서 닭, 오리 사육의 경우: 500m 이내 지역) - 돼지의 경우: 2,000m 이내 지역 |

※ 대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8월 7일

남원시 조례 제1180 호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남원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가·허가 그밖에 신고,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제증명등”을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밖에 신고,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의”로, “의

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각종 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제4조 제1항 본문 중 “제3조”를 “제3조의”로, “제증명등”을 “각종 증명 등”으로,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를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등을 발급(접수 처리)”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제증명등”을 “각종 증명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공부”를 “공적 장부”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증명등”을 “각종 증명 등”으로, “수 건의 제증명등을”을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로 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수료는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요금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5조 제2항 중 “인증기 및 통합민원자동발급기·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 규정에 따른 요율표에 따라”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제증명등”을 “각종 증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음”으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증명에 대하여는”을 “증명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제7조제1항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기타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제증명등”을 “각종 증명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증명등”을 “각종 증명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등록된”을 “등록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로, “제증명등”을 “각종 증명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자가”를 “사람이”로,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5.18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로,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로,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을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의 내용을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10.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11.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제7조제2항제2호 중 “청구한 때”를 “청구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6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을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③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각종 증

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 ④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를 “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별표 5]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제3조 관련)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 사진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필름· 테이프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컷마다 20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1,000원 |

| | | |
|------|--------------------------------------------------------------------------------------------------------------------------------------------------|--------------------------------------------------------------------------------------------------------------------------------------------------------------------------------------------------------------------------------------------------------------------------------------------------------------------------------------------------------------------------------------------------------------------------------------------------------------------|
| | |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6]

각종 증명 등 수수료의 감면(제7조 관련)

<고무인 규격>

위 증명은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 가로 8cm, 세로 2.5cm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 록지정 확인, 행정정보공개 등 (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 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4 내지 별표 5와 같다.</p> <p>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규 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p> | <p><u>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 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 라 남원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가·허가 그밖에 신고,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 지 정, 확인 등과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등 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 각종 증명과 인가· 허가 그밖에 신고,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행 정정보공개 등(이하 “각종 증 명 등”이라 한다)의----- -따라 ----.</p> <p>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각 종 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p> <p>제4조(기준) ① 제3조의----- ---각종 증명 등-----</p> |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남원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접수 처리)-----
-----.

1명-----
-----.
-----등록기준지-----

-----각종 증명 등-----.

② 여러 사람-----공적 장부-----
--1명-----
-----.

③ -----각종 증명 등-----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요금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로써 징수 할 수 있다.

② 인증기 및 통합민원자동발급기·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 규정에 따른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수수료의 반환) -----
-----각종 증명 등-----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음 경우에는-----

-----증명은-----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2. -----
-----따
라-----
각종 증명
3. -----

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한
정한다)-----
-----각종 증명 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4.-----

-----각종 증명 등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
-----등록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각종 증명 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6.-----

-----한정한다)-----
-----각종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사람이-----
-----각종 증명

8. 「5.18민주화유공자 예우에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
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
명 등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
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10.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관
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
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
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
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
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한 법률」 제7조-----

-----각종 증명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각종 증명

10.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사
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
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11.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관
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

② -----

-----.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
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

-----청

| | |
|----------------------------------------------------------------------------------------------------------------------------------------------------------------------|-----------------------------------------------------------------------------------------------------------------------------------------------------------------------------------------------------------------------------|
| <p>확인을 받아 <u>청구한 때</u></p> <p>3. <u>기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u>고 인정할 때</p> <p><u><신 설></u></p> <p>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을</u> 규칙으로 정한다.</p> | <p><u>구한 경우</u></p> <p>3. <u>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u>고 인정할 경우</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6의 고무인을 날인한다.</u></p> <p>제8조(시행규칙) ----- <u>필요한 사항은</u>----- -----.</p>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8월 7일

남원시 조례 제1179 호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양”을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사슴”을 “사슴·메추리”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다)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로서 소·돼지·말·닭·젓소·오리·<u>양·사슴·개를 말한다.</u></p> |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 ----- ----- ----- ----- ----- <u>양</u> <u>(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슴·메추리·개를 말한다.</u></p> |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 관련)

| 구분 | 절대금지 지역 | 상대제한 지역 |
|------|---------------------------------------------------------------------------------------------------------------------------------------------------------------------------------------------------------------------------------------------------------------------------------------------------------------------------------------------------------------------------------------------|-------------------------------------------------------------------------------------------------------------------------------------------------------------------------------------------------------------------------------------------------------------------------------------------------------------------------------------------------------------------------------------------------------------------------------------------------------------------------------------------------|
| 제한지역 | <p>○ 다음 각 동지역은 전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충동 - 죽향동 - 하정동 - 쌍교동 - 노암동 - 신촌동 - 어현동 - 금동 - 천거동 - 조산동 - 왕정동 - 향교동 - 산곡동 - 도통동 - 월락동 - 고죽동 <p>○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취입보)에서 상류하천(요천·백암천)5km까지 지적·임야도상 하천의 지적선에서 양쪽 300m이내의 대지</p> | <p>○ 절대금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지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고속국도휴게소, 병·의원, 입소정원 30명 이상의 사회복지시설로서 대지 경계선에서 축사대지 경계선까지 지적·임야도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p> <p>○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육우의 경우: 300m이내 지역 - 젖소의 경우: 500m 이내 지역 - 말의 경우: 100m 이내 지역 - 양·사슴의 경우: 700m 이내 지역 - 닭·오리·메추리개의 경우: 1,000m 이내 지역 (다만, 무창계사·무창오리사에서 닭, 오리 사육의 경우 : 500m 이내 지역) - 돼지의 경우: 2,000m 이내 지역 |

※ 대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8월 7일

남원시 조례 제1181 호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

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등)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시의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의 유통산업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에 속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사유로 인접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

정을 시장에게 요청할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취소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면적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시 고려사항) 시장은 전통상업보존 구역을 지정·변경 및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시의 경제 및 상생발전에 주는 파급효과
3.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주는 파급효과

제9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시행규칙 제 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제한 및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및 소비자의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공휴일 중 이틀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대상에서 제외 받으려는 대

규모점포 등은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과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출액 확인 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점일부터 자료제출일 15일 전까지의 매출액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를 위해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시장은 시의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남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36조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36조에 규정하지 아니한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통상업보존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적은 회의소집 통지서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 포함)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업무상 인지한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 및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조 정 신 청 서

| | | | | |
|-------------|---------|--|-----|--|
| 신 청 인 | 법 인 명 칭 | | | |
| | 성명(대표자) | | 연락처 | |
| | 주 소 | | | |
| 상 대 방 | 법 인 명 칭 | | | |
| | 성명(대표자) | | | |
| | 주 소 | | | |
| 분쟁 내용 | | | | |
| 피해 사항 | | | | |
| 조정요청 사 항 | | | | |
| 기타 사항 | | | | |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분쟁조정서

| | | | | |
|------|---------|--|-----|--|
| 신청인 | 법인명칭 | | | |
| | 성명(대표자) | | 연락처 | |
| | 주소 | | | |
| 상대방 | 법인명칭 | | | |
| | 성명(대표자) | | | |
| | 주소 | | | |
| 분쟁내용 | | | | |
| 조정내용 | | | | |

「유통산업발전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대방 (서명 또는 인)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8월 7일

남원시 조례 제 1182 호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를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광진흥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춘향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를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라 남원시 춘향테마파크”로, “징수에 관하여”를 “징수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 또는 의무경찰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3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란 남원시 춘향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에 입장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필요할 때”를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우려될 때”를 “우려될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개장시간) 테마파크 개장시간은 하절기인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입장권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중 “개장시간에 한”을 “개장시간에 한정”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입장료 면제)”를 “(입장료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를 면제할 수 있다”를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입장료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호자와 함께 온 6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

제8조 제1항제7호 중 “제1급 내지 제3급 장애인”을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으로, “동행하는 자”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관계자

9.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광한루원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입장료는 별표 1과 같이 할인요금을 적용한다.

제9조 제1항 본문 중 “입장료는 이를”을 “입장료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볼 수 있”을 “보이”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설치하고 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 중 “있을 때”를 “있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정될 때”를 “인정될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불가능할 때”를 “불가능할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할 때”를 “인정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손해에 대하여”를 “손해”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기본법에 의해”를 “「교육기본법」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료는 이를”을 “사용료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과 같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원상복구하되 그 비용일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 전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과실로 인하여”를 “과실로”로, “손해에 대하여”를 “손해”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을 “사람은 퇴장시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어류”를 “조류·어류”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반입한 자”를 “반입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피해를 주는 자”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개장시간 외에 경내를 배회하는 사람

제21조제1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22조 중 “이외”를 “외”로, “사항에 대하여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2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춘향테마파크 입장요금표(제5조 관련)

| 구 분 | 어 른 | 청소년·군인 | 어린이 |
|--------|-------|--------|-------|
| 개 인 | 3,000 | 2,500 | 2,000 |
| 단 체 | 2,500 | 2,000 | 1,500 |
| 할인(연계) | 1,800 | 1,500 | 1,200 |

※연계 할인권은 광한루원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
|------------------------------------------------------------------------------------|------------------------------------------------------------------------------------------------------------------------------------------------------------------------------------------------------------------------------------------------|
| <p>춘향테마파크 www.namwontheme.or.kr</p> | <p>남원항공우주천문대 사진</p> <p>※ 본 입장권을 소지한 분은 당일 입장에 한정하여 광한루원 입장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p> |
| | <p><small>· 본 관람권은 발행 당일에만 사용 가능하며 분실 시 재교부 되지 않습니다. · 본 관람권은 영수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small></p> <p>(590-100) 전북 남원시 양림길 14-9(아현동) 춘향테마파크 Tel 063-633-6912 천문대 063-620-6900 www.namwontheme.or.kr</p> |

(뒷 면)

[별지 제3호서식]

| 사 율 추향테마파크 사용변경 신청서 | | | |
|------------------------------------------------------------------------------------------------------------------------------------------------------------------------------------------------------------------------------------|----------------|------|--|
| 신 청 인 | 주 소 | | |
| | 성 명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사용내역 (변경내역) | 사용시설 (변경시설) | | |
| | 사용일시 (변경일시) | | |
| | 사용목적 | | |
| 기타(시설 추가 설치 등) | | | |
| <p>「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춘향테마파크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p> <p>남 원 시 장 귀하</p> | | |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u>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관광진흥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춘향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어린이”라 함은 <u>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 이하의 자</u>를 말한다.</p> <p>2. “청소년”이라 함은 <u>13세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u> 말한다.</p> <p>3. “군인”이라 함은 <u>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경 포함)을</u> 말한다.</p> <p>4. “어른”이라 함은 <u>19세이상 64세 이하의 자(대학생 포함)를</u> 말한다.</p> <p>5. “노인”이라 함은 <u>65세이상의</u></p> | <p><u>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u></p> <p>제1조(목적) ----- 「<u>관광진흥법</u>」 제64조에 따라 <u>남원시 춘향테마파크</u>----- ----- -----<u>징수에</u>----- ----- -----.</p> <p>제2조(정의) ----- -----<u>뜻은</u>-----.</p> <p>1. “어린이”란 <u>초등학교 학생 또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u>을 말한다.</p> <p>2. “청소년”이란 <u>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u>을 말한다.</p> <p>3. “군인”이란 <u>하사 이하의 군인 또는 의무경찰</u>을 말한다.</p> <p>4. “어른”이란 <u>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u>을 말한다.</p> <p>5. “노인”이란 <u>65세 이상인 사람</u></p> |

자를 말한다.

6. “단체”라 함은 어린이, 청소년 등이 30인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라 함은 테마파크의 관람을 위하여 입장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개장 및 폐장)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테마파크를 매일 개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장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
2. 폭설, 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테마파크를 폐장할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개장시간) 테마파크 개장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22:00까지,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는

을 말한다.

6. “단체”란 3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란 남원시 춘향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에 입장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개장 및 폐장) ① -----

1. ----- 필요한 경우
2. -----
----- 우려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 제1항에 따라 -----
----- 경우에는 -----

제4조(개장시간) 테마파크 개장시간은 하절기인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다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다만, 춘향제·홍부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징수 등) ① (생략)

② 입장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입장권 효력) 입장권은 당일 개장시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제8조(입장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문화재를 연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 4. (생략)
- 5.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자
- 6. (생략)
- 7. 등록장애인 및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3급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음 해 3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장권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입장권 효력) -----
---개장시간에 한정-----
-----.

제8조(입장료 감면) ① -----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입장료를 면제한다.

- 1. 2. (현행과 같음)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
- 4. (현행과 같음)
- 5. 보호자와 함께 온 6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
- 6. (현행과 같음)
- 7.-----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동행하는 보호자

8.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사 관계자

9.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입장자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 설>

제9조(입장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입장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하기 전에 입장자의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장권을 회수하고 입장료를 반환한다.

제10조(입장 요금표 등 게시) 시장은 입장 요금표 및 시설 사용 요금표 등을 표시한 사항을 입장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사용신청 등) ① 테마파크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

1명

8.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관계자

9.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광한루원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입장료는 별표 1과 같이 할인요금을 적용한다.

제9조(입장료 반환) ① -----
--- 입장료는 -----
----- . -----

----- .

제10조(입장 요금표 등 게시) ---

--- 보이 -----
----- .

제11조(시설 사용신청 등) ① ---
----- 사용하

는 자와 기존시설 외에 행사 등을 위하여 조명, 무대, 가설건축물 등 특수시설을 설치하고 자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제12조(시설 사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테마파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시설 사용료 감면) ① 시

려는-----

-----설치하려는-----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시설 사용 제한) ① -----

1.-----

-----있을 경우-----

2.-----

-----인정될 경우-----

3.-----

-----불가능-----

할 경우

4.그 밖에-----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손해-----

제14조(시설 사용료 감면) ① -----

장은 테마파크 시설 사용허가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생략)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지원받는 행사
- 3. (생략)
- 4. 교육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청, 각급학교 및 병설유치
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② (생략)

제15조(시설 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된 테마파크 시설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반환할 수 있다.

- 1. ~ 4. (생략)

제16조(시설 이용료 등) ① 사
랑의 언약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매
표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 접수 즉시 접수증을 신
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

- 1. (현행과 같음)
- 2.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 3. (현행과 같음)
- 4. 「교육기본법」에 따라-----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시설 사용료 반환) -----
----- --사용
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시설 이용료 등) ① -----
-----이용하려는 자는 별
지 제4호서식에 따라-----

-----.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증 교부시 별표 4의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원상복구)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되 그 비용일체를 사용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은 철거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관람자 및 시설사용·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긴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17조(원상복구) ① 제11조에 따른

②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 전부

제18조(손해배상) ①

과실로

손해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 훼손 및 조·어류를 포획할 우려가 있는 자
2. 위험물, 악취 발산물을 반입한 자
3. 만취,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
4. 폐장 이후까지 경내를 배회하는 자 등

제21조(시설 운영) ① 시장은 테마파크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테마파크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19조(퇴장) -----
-----사람
은 퇴장시킬-----.

- 1.-----조류·어류-----있는 사람
- 2.-----반입한 사람
- 3.-----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개장시간 외에 경내를 배회하는 사람

제21조(시설 운영) ① -----
-----범위-----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준용) -----
-----외-----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시행규칙) -----시행에

| | |
|------|--------|
| 정한다.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8월 7일

남원시 조례 제 1183 호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라”로, “징수에 관하여”를 “징수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 또는 의무경찰을 말한다.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6호 중 ““단 체” : 단체라 함은 30인이상 동일”을 ““단체”란 30명 이상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입장료”란 광한루원에 입장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관람요금)”을 “(입장요금)”으로 한다.

제4조 중 “지불하고 입장권을 구입하여 공원사업소 직원이 이를”을 “지급하고 입장권을 구입하며, 시설사업소 직원이”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중 “시설사업소장은 법적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금표”로, “볼 수 있”을 “보이”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개장시간) 경내 개장시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장시장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입장료의 면제)”를 “(입장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를 면제한다”를 “제3조에 따른 입장료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보호자를 동반한”을 “보호자와 함께 온”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얻어”를 “받아”로, “하는 자”를 “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65세 이상인 사람

제8조 제1항 제9호 중 “제1급 내지 제3급”을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로, “동행하는 자”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춘향테마파크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별표 1과 같이 할인요금을 적용한다.

제9조 제1항 본문 중 “제7조에 규정된”을 “제7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절취하여”를 “잘라”로, “잔여분(문화재사진 등 부분)은”을 “나머지(문화재사진 등 부분)는”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시설을 할”을 “시설을 경내에 설치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를 “시장은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광한루원”을 “시장은 광한루원”으로, “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을 “차량은 별표 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경우 운영권을 사회단체에 위탁징수케 할”을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징수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우에는 1년 이내”를 “경우에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운영권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를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에 주차료”로 한다.

제13조 중 “사용하고자 할”을 “사용하려 할”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시장은 다음 각 호”로, “경내사용을 금한다”를 “경내 사용을 금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흥행·오락위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또는 공연

제14조 제2호 중 “정치, 시위 성토”를 “정치, 시위, 성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판매, 구걸 행상”을 “판매, 구걸, 행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경내 질서유지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용 행위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퇴장) 시장은 광한루원에 입장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퇴장시킬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영조물이나 그 밖에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조류·어류를 포획하는 사람
4. 위험물·악취 발산물을 반입한 사람
5.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개장시간 외에 경내를 배회하는 사람

제16조 중 “사용자로서”를 “사용자로서”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은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광한루원 입장요금표(제3조 관련)

| | | | |
|--------|-------|--------|-------|
| 구 분 | 어 른 | 청소년·군인 | 어린이 |
| 개 인 | 2,500 | 1,500 | 1,000 |
| 단 체 | 2,000 | 1,000 | 500 |
| 할인(연계) | 1,300 | 500 | 200 |

※연계 할인권은 춘향테마파크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 면)

| | | |
|--------------------------------------------------------------------|----------------------------------------------------------------------------------------------------------------------------------------------------------------------------|-----------------------------------------------------------------------------------------------------------------------------------------------------------------------------------------------------------------------------------------------------------------------------------------------------------------------------------------------------------------------------------------------|
| <p>『춘향·이도령 캐릭터』</p> <p><u>광 한 루 원</u> www.gwanghallu.or.kr</p> | <p>『광한루원 안내도』</p> <p>※ 본 입장권을 소지한 분은 당일 입장에 한정하여 춘향테마파크 입장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p> <p>시설사업소 (590-080)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천거동) Tel 063-625-4861 fax 063-620-6834</p> | <p>남 원 광 한 루(보물 제28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19년(세종원년) : 황희정승이 광통루 건립 ○1444년(세종26년) : 정인지가 광한루 개칭 ○1597년(선조30년) : 정유재란으로 전소 ○1626년(인조4년) : 남원부사 신감이 재건 ○1963년 1월 21일 : 보물 제281호로 지정 ○2008년 1월 8일 : 명승제33호(광한루원)지정 <p>관람시간 : 08:00~20:00</p> <p><u>www.gwanghallu.or.kr</u></p>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u>조례</u>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문화재보</u> | 제1조(목적) ----- 「 <u>문화재</u> |

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6
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
다.

2. “청소년” : 13세이상 18세이
하인 자와 학생증 또는 청소
년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3. “군인” : 하사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을 말한다.

4. “노인” :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5. “어른” : 19세이상 64세이하
인 자를 말한다.

6. “단체” :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 : 입장료라 함은 광
한루원입장료를 말한다.

제3조(관람요금) (생략)

제4조(입장료 납부 등) 입장자는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지불하고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징수에--

-----.

제2조(정의) -----
-----뜻은-----.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
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또는 학생증·청
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
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
또는 의무경찰을 말한다.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
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30명 이상 같은----

-----.

7. “입장료”란 광한루원에 입장
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입장요금) (현행과 같음)

제4조(입장료 납부 등)-----
----- 지급하고

입장권을 구입하며 공원사업소
직원이 이를 징수한다.

제5조(입장권 등) ① (생략)

②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단체
입장권 등 신청서와 단체입장료
영수증은 동시에 기록될 수 있
도록 편철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요금 등 게시) 시설사
업소장은 법적근거를 명시한
요금표와 개장시간 등을 표시한
사항을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개장시간) 경내 개장시간은
하절기인 4. 1부터 10. 31까지와
동절기인 11. 1부터 다음해 3. 3
1까지 구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정 운영
한다.

제8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
료를 면제한다.

- 1. 2. (생략)
- 3. 문화재를 연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

입장권을 구입하며, 시설사업소
직원이-----.

제5조(입장권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삭제

제6조(입장요금 등 게시) 남원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
금표-----
-----보이--

--.

제7조(개장시간) 경내 개장시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
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의 감면) ① -----

-----제3조에 따른 입장료
를 면제한다.

- 1. 2. (현행과 같음)
- 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은 자

- 4. (생략)
- 5.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영·유아
- 6. (생략)
- 7. 시장의 허가를 얻어 관할구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 8. 65세이상인 노인
- 9. 등록장애인 및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3급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제9조(매표 및 수표) ① 입장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에 규정된 개장 시간에 고정매표소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받--

- 4. (현행과 같음)
- 5. 보호자와 함께 온-----
- 6. (현행과 같음)
- 7. -----받아-----
- 하는 경우
- 8. 65세 이상인 사람
- 9.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10. 그 밖에-----

② 춘향테마파크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입장료는 별표 1과 같이 할인요금을 적용한다.

제9조(매표 및 수표) ① -----

-----제7조의-----

② 수표원은 입장자가 입장할 때마다 입장권의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 보관하고 잔여분(문화재사진 등 부분)은 입장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경내 시설물) ① 입장객의 오락과 편의를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설물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제12조(주차료) ① 광한루원 주차장에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주차료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권을 사회단체에 위탁징수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년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권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징수금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경내 사용) 특별한 목적을

② -----

---잘라-----
나머지(문화재사진 등 부분)는-----
-----.

제11조(경내 시설물) ① -----
-----시설을 경내에 설치할-----.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2조(주차료) ① 시장은 광한루원-----차량은 별표 2에 따른-----
-----.

② -----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징수할-----
-. --경우에 위탁기간은 1년 이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에 주차료-----

-----.

제13조(경내 사용) -----

위하여 경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4조(경내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내사용을 금한다.

- 1. 홍행, 마약 또는 오락위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공연
- 2. 정치, 시위 성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 3. 판매, 구걸 행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 사용
- 4. 기타 경내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사용 행위

제15조(퇴장) 광한루원에 입장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1. 삭 제
- 2. 삭 제
- 3. 영조물이나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조·어류를 포획하는 자
- 4. 위험물, 악취 발산물을 반입한 자
- 5. 만취,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

-----사용하려 할-----

-----받아야-----.

제14조(경내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
-----경내 사용을 금지한다.

- 1. 홍행·오락위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또는 공연
- 2. 정치, 시위, 성토-----
- 3. 판매, 구걸, 행상-----
- 4. 그 밖에 경내 질서유지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용 행위

제15조(퇴장) 시장은 광한루원에 입장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퇴장시킬 수 있다.

- 1. 삭 제
- 2. 삭 제
- 3. 영조물이나 그 밖에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조류·어류를 포획하는 사람
- 4. 위험물·악취 발산물을 반입한 사람
- 5.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자
 6. 폐장이후까지 경내를 배회하
는 자

제16조(배상) 경내 입장자 또는
사용자로서 경내 영조물 기타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
 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우려가 있는 사람
 6. 개장시간 외에 경내를 배회
하는 사람

제16조(배상) -----
사용자로서-----그 밖
에-----
 -----.

제17조(시행규칙) -----시행에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8월 7일

남원시 조례 제 1184 호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시설사업소(이하 “시설사업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을 “남원시 시설사업소의 운영에”로 한다.

제2조 중 “시설사업소”를 “남원시 시설사업소”로 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남원시장은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3조 제2항 중 “사항은 이를”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어현동 37-111번지”를 “양림길 12”로 한다.

②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노암동 1-1번지”를 “양림길 48-63”으로 한다.

[별표]

관리시설물의 명칭과 위치 (제2조 관련)

| 시설물 명칭 | 위 치 |
|-------------------|---------------|
| 광 한 루 원 | 남원시 요천로 1447 |
| 관 광 지 | 남원시 양림길 17 |
| 음 악 분 수 대 | 남원시 양림길 12 |
| 야 의 무 대 | 남원시 양림길 12 |
| 춘 향 문 화 예 술 회 관 | 남원시 양림길 43 |
| 춘 향 멀 티 프 라 자 | 남원시 양림길 43 |
| 춘 향 테 마 파 크 | 남원시 양림길 14-9 |
| 향 토 박 물 관 | 남원시 양림길 14-9 |
| 승 월 교 무 지 개 분 수 | 남원시 노암동 807-1 |
| 교 룡 산 국 민 관 광 지 | 남원시 산성순환길 714 |
| 남 원 항 공 우 주 천 문 대 | 남원시 양림길 48-63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공공재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u>남원시시설사업소(이하 “시설사업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 <p>제1조(목적) ----- ----- ----<u>남원시 시설사업소의 운영</u>에----- ----- -----.</p> |
| <p>제2조(명칭과 위치) <u>시설사업소</u>에서 관리해야 하는 관리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p> | <p>제2조(명칭과 위치) <u>남원시 시설사업소</u>----- ----- -.</p> |
| <p>제3조(사용료) ① <u>시설물을 이용 및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한다.</u> ② 시설물의 사용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u>사항은 이를 따로</u>조례로 정한다.</p> | <p>제3조(사용료) ① <u>남원시장은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u> ② ----- -----<u>사항은</u>----- -----.</p> |
| <p>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u>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p>제5조(시행규칙) -----<u>시행에</u>----- ----- -----.</p> |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8월 7일

남원시 규칙 제 553 호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규칙” 을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의 제2호 중 “議”를 “의회”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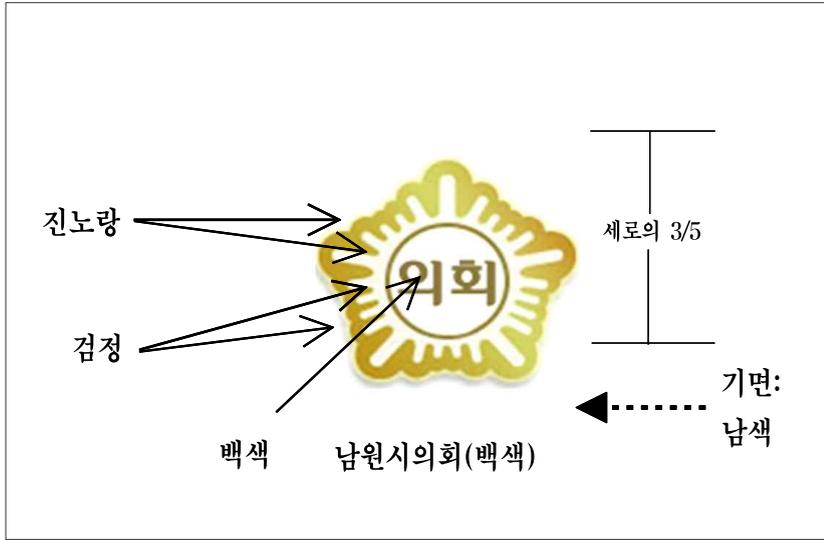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시의회기 규격 및 모형도

가로 1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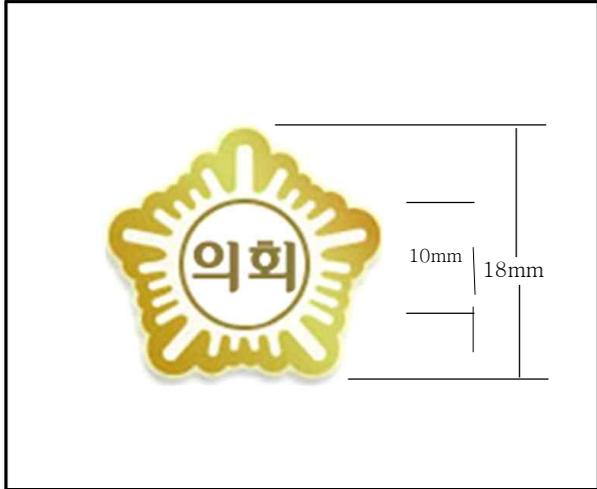


세로 90cm

[별표 2]

남원시의회 의원 배지 모형도

<모 형>



<규 격>

| 구 분 | 규 격 및 색 채 |
|---------|----------------------------------------------------|
| 전 체 크 기 | 18mm |
| 모 양 | 금색무궁화 크기 : 18mm |
| 중 심 부 | “의회”글자색 : 금색 |
| | 바 탕 원 : 8mm 테두리(바깥지름) : 10mm 테 두 리 두 께 : 2mm |
| | 바 탕 색 : 백 색 테 두 리 : 금 색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규칙</u></p> <p>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테두리원, 원속에 “議”자를 표지하며, 기면 하단에 “남원시의회”를 표지한다.</p> | <p><u>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u></p> <p>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 -----</p> <p>1. (현행과 같음)</p> <p>2.----- ----- “의회”----- ----- -----.</p> |

남원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8월 7일

남원시 훈령 제 345 호

남원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남원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로 한다.

제2조 중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제3조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제반사항에 대하여”를 “모든사항을”로, “인수·인계”를 “인수인계”로 한다.

제5조 제1항제2호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7조 제5항 중 “없는 때”를 “없는 경우”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개회하고”를 “개의하고,”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사람에 한하여”를 “사람만”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 중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라목 중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를 “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을 “이용하려는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장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변조”를 “위조·변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장구”를 “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유통망에 대해서는”을 “유통망은”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간정보에 대하여”를 “공간정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공할 때”를 “제공할 경우”로,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을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로 한다.

제14조 중 “등에 대하여”를 “등을”로, “협약 후”를 “협약 후에”로, “거쳐”를 “마친 후”로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거쳐”를 “마친 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력한 때”를 “출력한 경우”로, “동일하게”를 “같이”로, “명시하여야”를 “분명하게 적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한하고자 할”을 “제한할”로, “적색으로 기재한다”를 “붉은색으로 적는다”로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출하고자 할 때”를 “반출할 경우”로 한다.

제17조 제3항 중 “출입통제에 대하여”를 “출입통제”로, “제43조 및 제44조”를 “제53조 및 제55조”로 한다.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주용역을 하고자”를 “외주용역을”로, “장구

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강구하기”를 “마련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발생한 때”를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실사항에 대하여”를 “부실사항은”으로 한다.

제23조 제2호 중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을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행정자치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제5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남원시 소송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② 「남원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③ 「남원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④ 「남원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⑤ 「남원시 민방위경보단말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⑥ 「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표 1]

공간정보의 등급별 분류기준(제9조 관련)

| 공간정보 | 등급 | 분류기준 |
|------|------|----------------------------------------------------------------------------------------------------------------------------------------------------------------------------------------------------------------------------------------------------------------------------------------------------------------------------------------------|
| 항공사진 | 비공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 | 공개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2차원좌표(緯經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자료 3차원좌표(緯經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자료 |
| | 공 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해상도 50cm급 초과 항공사진은 건물·토지 소유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 단, 국정원장이 별도로 통보한 지역의 해상도 25~30cm급 항공사진은 일반인 대상 제공 또는 판매시 기록 유지를 생략 할 수 있다. |
| 위성영상 | 비공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
| | 공개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밀 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자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된 해상도 4m 초과자료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자료 |
| | 공 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일반지역 자료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50cm급 초과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 유지 |

| 공간정보 | 등급 | 분류기준 |
|-----------|------|---------------------------------------------------------------------------------------------------------------------------------------------------|
| 수치지도 | 비공개 |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 (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
| | 공개제한 | ◦ 군사지도 ◦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 | 공개 |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1:1,000 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에 제공 시에는 인적사항 기록유지 |
| 그 밖의 공간정보 | 비공개 |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 | 공개제한 |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격자간격이 90m 보다 정밀한 3차원 공간정보 중 3차원 좌표가 포함된 자료 |
| | 공개 |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격자간격 90m 이상 입체영상자료 ※ 토양지질도, 도시계획도, 도로건설계획도, 지번도, 전자해도 등 ◦ 도로명사업에 따라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을 제외한 새주소 안내도 |

※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별표 2]

안전지출 및 파גיע획(제19조 관련)**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시 남원시가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를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גיע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남원시가 생산·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

3. 지출 또는 파גיע의 시기

-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을 현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경우
-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공간정보 등이 누설·전파·분실·도난·손실 또는 파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 라. 그 밖에 현 보관 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4. 지출 또는 파גיע의 절차 및 장소 등

가. 일과 중일 때의 지출 절차

(1)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제3호의 상황에 따른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의 지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지출을 명한다.

(2) 보관책임자의 지출조치**(가) 공간정보 등 지출요원 소집 및 인출지시**

지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그 소속 직원이 된다.

(나) 공간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지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지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지출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지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의 지출절차

(1)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3호에 따른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따라 비밀 등에 대한 지출을 명한다.

(2) 비상소집 조치(예비군을 포함한다)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 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한다.

(3) 지출조치

(가) 안전함 개방,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등 확인

당직책임자는 숙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실·과·소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인출조 편성 및 인출지시

당직책임자는 당직자(청원경찰 포함)로 구성된 인원으로 각 실·과·소 별로 분담한 인출조를 편성하여 해당하는 열쇠와 다이얼 번호를 인계하여 인출토록 지시한다.

(다) 인출조의 인출작업

분담 받은 해당 실·과·소의 공간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함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인출 또는 인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지출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인출조원이 이를 하되 비상 소집되어 도착한 예비군 또는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다. 지출장소

(1)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지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지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라. 파기절차 및 장소

(1) 적, 무장공비, 폭도 그 밖에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의 안전지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 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2) 파기절차는 제4호 가목, 나목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13조 관련)

| | | | | |
|-------------------|----------|--|------|--|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 소속기관(단체) | | 직 책 | |
| 요청자료 | | | | |
|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 | | | |
| 관리대책 | | | | |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승인서(제13조 관련)

| | | | | | | |
|---------------|-------|--|----------|-----|--------------|--|
| 요 청 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 주 소 | | | | | |
| | 소속·직책 | | | | | |
| 요청자료 | | | | | | |
| 사용목적 활용계획 | | | 타당성 | | | |
| | | | | 검토자 | | |
| 승 인 사 항 | 보안대책 | | | | | |
| | 제공자료 | | | | | |
| | 제공방법 | | | | | |
| | 제공일시 | | 반납 여부 | | 반납일 (폐기일) | |

년 월 일

보안담당관 직책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7호서식]

보 안 각 서(제13조 관련)

본 기관(또는 인)은 남원시의 공개제한(또는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신청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업무상 취득한 모든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에 따른 처벌과 제공된 공간정보의 결과물·산출물 등을 환수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보안각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요청자료 | | | | |
|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 | | | |
| 관리대책 | | | | |
| 관리책임자 | 성 명 | (서명) | 생년월일 | |
| | 소속기관 | | 직 책 | |
| 수 령 자 | 성 명 | (서명) | 생년월일 | |
| | 소속기관 | | 직 책 | |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남원시 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 ----- ----- ----- ----- ----- ----- ----- ----- -----</p> |
| <p>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u>본청, 직속기관, 사업소</u> 및 읍·면·동(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 적용한다.</p> | <p>제2조(적용범위) ----- ----- -----<u>남원시(이하 “시”라 한다)</u>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 -----</p> |
| <p>제3조(보안책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u>강구하여야</u> 한다.</p> | <p>제3조(보안책임) ----- ----- ----- ----- ----- ----- ----- ----- ----- ----- -----<u>마련하여야</u>-----.</p> |
| <p>제4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생략) ② 보안담당관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u>제반</u></p> | <p>제4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u>모</u></p> |

사항에 대하여 후임 보안담당관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공간정보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 5. (생략)

② (생략)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략)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임무·기능)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든사항을-----
-----인수인계-----
-----.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

-----.

1. (현행과 같음)

2.-----

-----마련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없는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의 임무·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개회하고,---
-----의
결한다.

③ (생략)

제10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그 공간정보와 업무 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략)

제11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파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확보, 철제용기 등에 별도 보관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유지

3.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구분하여 설정

가. ~ 다. (생략)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 ① -----

-----사람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

-----.

1. (현행과 같음)

2.-----

-----별지 제2호서식-----

3.-----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관리 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접근

4. (생략)

5.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② (생략)

제12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공간정보의 위·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강구한다.

1.·2. (생략)

3.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로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 대책 강구

4. 공간정보 유통망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확인

제13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① 보안담당관은 소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제공할 수

-----이용하

려는 사람은-----

4. (현행과 같음)

5.-----

-----마련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

-----위조·변조-----

1.·2. (현행과 같음)

3.-----

-----마련

4.-----유통망은-----

--

제13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① -----

-----공간정보를-----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
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는 경우

②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
정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
할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
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
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
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
정보에 대한 복제·복사를 제
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
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재한다.[이 자료는 관리책임
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④ (생략)

제16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
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
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

령」-----

2.-----
-----마
친 후-----

② -----
-----출력
한 경우-----갈게--

-----분명하게 적어야--.

③ -----

-----제한할-----

-----붉은색으로 적는다.-----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
지) ① -----

-----.

1.-----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② (생략)

③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8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관리부서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공간정보 외주용역 감독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용역업체에

---따라-----

2. (현행과 같음)

② -----
-----반출할 경우-----

----.

제17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출입통제-----

-----제53조 및 제55조-----
-----.

제18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외주용
역을-----

-----마련하여야-----
----.

1. ~ 5. (현행과 같음)

② -----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보안지도 및 점검) ① 시장은 관리부서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관리부서의 장은 보안지도 및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보완토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관리부서의 장은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장소·사고자 인적사항·사고내용·조치사항 등을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보안담당관은 보안사고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보안관리 부실사항에 대하여 현장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시정·개선하

-----마련하여야-----

-.

제20조(보안지도 및 점검) ① ---

-----마련하기-----

-----.

② (현행과 같음)

③ -----

-----마련하여야-----.

제22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발생한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③ -----

-----부실사항은-----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1. (생략)
- 2.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 3. (생략)
- 4.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 5. ~ 8. (생략)

-----.

제23조(준용) -----

-----.

- 1. (현행과 같음)
- 2.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 3. (현행과 같음)
- 4. 「행정자치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5. ~ 8. (현행과 같음)